

技術導入 라이센싱契約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을

III. 技術導入라이센스와 獨占禁止法

1. 라이센스와 獨占禁止法

特許權은 特許發明의 實施를 獨占하는 權利이며 特許된 發明인 物件이나 方法을 特許權者가 増加적으로 自身의 事業活動目的을 위하여 財產權을 行使하는 것 이므로 獨占禁止法과 關聯되어 問題되는 것은 아니며 더우기 特許權은 法律上 認定된 獨占權을 갖는 것이다. 또한 그 自體에서 競爭을 實質으로 制限하는 行為, 즉 市場支配力を 形成하는 行為로서 評價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他事業者の 競爭機能의 自主의 行使 制限에 바로 連結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特許權者 가 特許發明을 實施하거나 라이센스를 통하여 市場支配力이 形成되고 혹은 他事業者の 自由스러운 競爭機能이 制限되어 公正한 競爭을 制限할 憂慮가 있게 되면 一般財產權 특히 所有權行使와 같이 獨占禁止法規定의 運用이 있게 된다. 또한 特許와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게 된 노우 하우에 관해서 노우 하우 所有者가 라이센스함에 있어서 制限을 가하는데, 이 또한 獨占禁止法의 對象이 된다.

一般的으로 國際라이센스 去來에 있어서 獨占禁止法과의 關係를 살펴볼 경우 特許 라이센스와 노우 하우 라이센스로 나눌 수 있다. 前者에 있어서는 獨占禁止法의 解釋이나 適用이 꽤明白하게 밝혀져 있는 것에 비해 後者에 있어서는 그 取扱이 不明確한 경우가 많고 現在로서는 前者の 解釋과 適用에 準하여 施行되고 있다. 원래 特許權의 取得 및 行使는 違法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라이센스함에 있어서 特許權者 즉,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게 課하는 制限에 있어서 라이센싱契約은 라이센서가 라이센시보다 優越한地位에 있으

므로 이를 利用하여 그 條件들이 “不當히 拘束” 또는 “來去上の 優越의 地位의 不當利用”으로서 不公正한 去來方法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問題가 생긴다. 여기에는 特許權者가 特許權賦與로부터 생기는 權利의 限界를 넘는 特許權濫用(Misuse of Patent)이 包含되며 特許權濫用은 반드시 競爭制限效果를 갖는 것은 아 니나 特許權者가 자신의 特許를 特許法이 정하는範圍內에서 適節하게 實施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利用하고자 하는 제3者와의 關係에서 不當히 制限하는 效果가 發生될 憂慮가 있으므로 獨占禁止法上 違反行為가 된다 할 수 있다.

2. 獨占禁止法의 關聯規定 및 判斷基準

우리나라는 “獨占禁止 및 公正去來에 關한法律” 第 23條에서 技術導入契約에 있어서의 不當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에 該當하는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國際契約締結을 禁止하고 있다. 이 规定은 契約締結當事者에게 모두 適用되는 것으로 不當한 國際契約의 라이센서 뿐만 아니라 不利한立場에서 이를 締結하지 않을 수 없던 라이센서 즉, 競爭이 實質으로 制限된 被害者에게도 適用이 된다. 이 规定의 目的是 어떤 責任을 물는 것이 아니라 不當한 國際契約에 의하여 國내 라이센시가 拘束되어 國內市場의 公正한 競爭을 해치고 不公正한 去來가 誘發될 憂慮가 있는 條項을 修正하여 라이센시의 交渉力を 確保하는 것에 있다.

美國에서는 셔먼법(Sherman Act) 第1條과 第2條에 의하여 各州間 또는 外國과의 라이센스를 規制하고 있는바 美國에서의 特許와 라이센스의 獨占禁止法 違反事件은 政府가 獨占禁止法을 適用하는 訴訟과 防禦方略이나 反訴로서 提起된 獨占禁止法違反 또는 特許權濫用에 의한 侵害訴訟 내지 이로인한 損害賠償事件에 서 많이 생긴다. EEC國家間의 라이센싱契約에는 로마

實務(5)

중심으로



趙哲顯

〈辨理士〉

目次

- I. 技術導入
- II. 技術導入 라이센싱 契約의 内容
- III. 技術導入 라이센스와 獨占禁止法
- IV. 技術導入과 結付된 問題의 利害調整
- V. 技術導入과 企業의 評價

〈고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條約(Treaty of Rome) 第85條와 第86條가 適用된다. 이에 의하면 直接·間接으로 EEC의 會員國間의 去來에 影響을 미치고 EEC內의 競爭을 制約하거나 歪曲시키는 協定이나 共同行爲는 禁止되고 당연 無效이다. UNIDO와 UNCTAD등의 國際機關에서도 制限의 去來條項의 排除를 規定한 바 있다. 獨占禁止法과 이들의 法律適用의 基準은 特許權이 正當한 財產權으로서의 特性은 갖지만 동시에 公共目的에 寄與하여야 하는 條件의 隨伴을 強調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特許權은 特許制度가 公共의 利益을 增進하는 것에 의해 正當化되고 發明者의 利益에 優先하여 公共利益이라는 產業政策의 견지에서 合當하게 運營되어야 하기 때문에 發明의 保護의 限界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特許權者の 權利行使가排除되어야 한다는데, 총점을 둔다 할 수 있다.

3. 獨占禁止類型의 考察

우리나라의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法律” 第23條 第2項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의範圍 및 基準은 經濟企劃院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라고 規定하였다. 이에 따라 1981年 7月 15日 經濟企劃院 告示 第50號로서 技術導入契約에서의 不當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에 該當하는 内容의 告示內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原材料 및 部品등을 라이센서 또는 그가 指定하는 者로부터 不當하게 購入하도록 하는 경우

나. 라이센서가 提供한 技術을 使用하여 製造한 製品(契約製品)에 關하여 販賣地域을 制限하는 경우, 다만 輸出地域制限의 경우로서 ① 라이센서가 라이센서의 輸出을 制限하는 地域에서 이미 契約技術을 締結하고 있는 경우 ② 라이센서가 制限地域에서 契約製품에 대하여 經常的인 販賣活動을 하고 있는 경우 ③ 라이

센서가 制限地域을 第3者的 獨占販賣地域으로 認定하고 있는 경우에는例外로 한다.

다. 契約製品에 대하여 라이센서의 販賣窓口, 販賣數量 또는 販賣價格을 制限하는 경우, 다만 라이센서가 “나”號의 制限地域에 대하여 라이센서의 輸出을 認定하는 경우에는例外로 한다.

라. 競爭的 製品의 取扱이나 競爭的 技術의 使用을 不當하게 制限하는 경우.

마. 契約當事者の 互惠의in 義務없이 라이센서만이 라이센서에게 契約期間中에 開發된 改良技術을一方의으로 提供 또는 報告하게 하는 경우.

바. 契約技術을 使用하지 않은 製品에 대하여 技術使用料를 賦課하는 경우.

사. 라이센서가導入한 工業所有權以外의 技術에 대하여 契約期間 滿了後에 아래 提供한 技術資料의返還을 要求하거나 繼續的 使用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경우.

아. 라이센서에게 國際契約慣例上一般的으로 認定할 수 없는 不當한 拘束條件을 賦課하는 경우 등이다.

上記의 類型은 美國이나 로마條約을 통한慣行 및 日本公正取引委員會가 1968年 5月 24日告示한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法律에서 規定한 不公正去來行爲나 不當한去來制限에 따른 技術導入契約의 認可基準과 類似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行爲類型을項目別로 살펴보고 理解를 도울 수 있도록 實際技術導入라이센싱契約에 있어서 Practice를 中心으로 例文을 들어 說明하여 보기로 한다.

가. 原材料등의 購入先의 制限

原材料 部品等을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가 指定하는 者로부터 購入하는 義務를 賦課하는 條項

이를 法律的 用語로 結付條項 즉, Tie-in 혹은 Tying Clause라 하며 라이센서가 라이센서로부터 받은 特許

權 등을 實施할 때 必要한 原材料, 部品, 中間材 및 資料材 등을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가 指定하는 第3者로부터 購入하도록 義務를 賦課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原材料·部品등은 物件의 發明 또는 物을 生產하는 發明의 製造를 위하여 諸요한 原料, 材料, 部品, 機械 내지 裝置를 包含하여 裝置의 경우에는 上記의 裝置를 使用하는데 諸요한 原材·材料등이 包含된다.

原材料의 購入先에 關한 決定은 본래 라이센서의 自由이며 이를 強要하는 것은 라이센서의 優越的 地位를 濫用한 것으로 되고 라이센서가 當該物品을 國內에서 代替供給源에 依하여 購入할 수 있어도 그것이 不可能하게 되고 販賣業者間의 競爭을 통한 良質의 저렴한 價格의 物品購入機會가 박탈된다.

또한 라이센서는 이를 통해 로얄티以外의 收益을 얻을 수 있게 되나 라이센서는 間接費用의 增加로 製品의 價格이 上昇되어 製品의 競爭力を 弱化시키는 主要因이 된다. 이러한 Tying Clause는 우리나라의 경우 上記告示 가. 에서 禁止하고 있으며 顯著한 不公正行爲로 規制하고 있다.

그러나 原材料 購入先이 라이센서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나열하여 보면 ① 原料自體가 特許製品이 되어 노우 하우가 있는 경우 ② 技術導入 라이센싱契約이 商標使用의 許諾를 包含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製品에 關하여 品質의 保障을 보통要求하므로 그 品質의 同一性을 위하여 原材料 購入先을 制限받는 경우가 있고 ③ 라이센서로부터 原材料를 購入하는 것이 經濟的으로 유리할 때 購入先을 制限하는 것은 오히려 라이센서에게 不當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우에는 結付條項이例外라고 볼 수 있다.

● 具體的인 事例

技術導入 라이센싱契約時 結付條項과 관련한 다음 例文에 關하여 主務部署가 原料와 容器購入先의 制限 및 製品製造時 라이센서의 事前承認條項을 삭제한 例;

The products of the agreement which the parties will have decided to manufacture locally will be manufactured by the License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prescriptions and technical informations provided by Licenser and from Raw materials and packaging materials brought according to Licenser's instructions. In case the Licensee will manufacture the products of the agreement from some of the above materials supplied by its own means, the use

of the same shall be subject to Licenser's prior approval.

4. 地域制限

特許製品 또는 實用新案製品에 있어서 라이센서의 輸出地域을 制限하는 경우. 다만 ① 라이센서에 의한 輸出이 制限되어 있는 地域에 대하여 라이센서가 特許權을 登錄하고 있는 경우 ② 라이센서가 制限地域에 있어서 特許製品등에 대하여 經常의 販賣活動을 行하고 있는 경우 ③ 라이센서가 制限地域을 第3者的 獨占의 販賣地域으로 認定하고 있는 경우등은 除外된다.

製品販賣의 地域的 制限은 라이센서가 라이센서에게 技術을 提供함으로써 現在나 將來에 라이센서가 라이센서의 市場을 侵蝕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設定된다. 사실 라이센서는 그 技術을 海外에서 使用하게 許諾은 하지만 自己市場에 있어서 스스로에 關하여 새로운 契約者를 만들기 두려워 하기 때문에 안정된 市場은 자기에게 留保하고 新規市場을 開放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技術導入 라이센싱契約에 있어서 地域制限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輸出地域의 制限이며 우리나라를 包含한 多數의 國家들은 規模의 經濟를 갖기 위해 輸出을 通한 經濟成長의 근거에서 이러한 制限을 不公正한 行爲로 보고 禁止하고 있다. 원래 特許權은 강한 屬地主義의 原則에 따르고 있으며 法律上 獨占權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一定地域을 分割하여 라이센스를 許諾하는 權限이 있으므로 國際契約에 있어서도 同一한 結果로서 이러한 地域制限은 當然違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國際契約이나 國內의 라이센싱契約이라 할지라도 市場分割合意 또는 排他的 支配形式을 위한 競爭抑壓이라면 特許權의 正當한 行使라고 볼 수 없고 獨占禁止法의 違反이라 判斷된다. 더우기 노우 하우 라이센스인 경우에는 特許 라이센스와 달리 法律制度에 의해 保護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地域制限이 違法으로 되기 쉽다.

다만 상기 ①② 및 ③의 但書條項에서처럼 그 制限의 效果등이 合理의인 경우에는 違法하다고 할 수 있는바 但書 ①의 경우 制限地域內의 契約製品 輸出이 當該 地域內에서 라이센서의 特許權 내지는 實用新案權을 侵害하는 경우라면 但書 ②의 當該 制限地域에 있어서 契約製品에 대한 特許權이 없는 경우에도 支店, 營業所등을 設置하여 經常의 販賣活動을 하고 있는 때에는 라이센서의 利益을 侵害하지 않는다고 期待하는 것은 通常無理이므로 이를 認定한다 볼 수 있다. 但書 ③은 라이센서가 이미 第3者에게 그 地域內

에서 輸出을 許諾하였다면 第3者 및 他實施權者와의 契約을 違反하는 結果가 되어 گ서히 그 地域內의 輸出期待는 어볍다 할 것이므로 例外로서 認定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但書 경우도 앞으로 經常의 人 販賣活動을 行하기 위한 豫定地로 내다보고 令後第3者에게 販賣權을 구상키 위한 計劃만으로는 包含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具體的인 事例

① 技術導入 라이센싱 契約時 地域制限과 관련한 다음 例文에 대하여 主務部署가 輸出制限을 爬解하고 라이센서의 同意에 의한 제3국에서의 製造도 可能할 것을 追加要求한 例

Licensee acknowledges that Lessor has extensive licensing arrangements throughout the world, and accordingly, covenant as follows:

- i. That it will not manufacture, use, or sell

Licensed product outside the Licensed Territory;

ii. That it will not knowingly sell Licensed product to persons within in Licensed Territory for ~~use~~ or resale elsewhere than in the Licensed Territory;

② 輸出地域을 制限하는 條項을 爬解요구한 例

Should Licensee propose to sell or lease a Licensed product outside the Territory, Licensee shall first verify with Lessor that such proposed sale or lease will be within an outside Territory as defined herein.

③ 라이센서는 韓國以外의 地域에 契約製品을 輸出할 경우 라이센서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는 條項의 爬解를 要求한 例

Licensee shall obtain Lessor's consent to export the Licensed products to outside Territory. <계속>

(안) 우수발명시작품 제작 지원 (내)

-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세·개인발명자·중소기업자로써 아래 발명·고안을 보유한 자
 - 특히·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되었을 것
 - 당해 권리가 시작품 제작 지원년도말까지 존속되는 것

◎ 신청기간 : 1988년 2월 1일 ~ 29일

◎ 신청장소 : — 135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중앙종묘빌딩)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전홍부
(전화 : 557-1077~8)

- ◎ 보조금교부기준 : ▲ 영세발명자는 제작비용의 전액범위 내
 - ▲ 개인발명자는 제작비용의 80%
 - ▲ 범위 내
 - ▲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50%
 - ▲ 범위 내
- ◎ 보조금교부한도 : 1인당 800만원 이내

(안) 제16회 제네바 발명·신기술전시회참가 (내)

- ◎ 주 관 : 한국발명특허협회
- ◎ 기 간 : 1988. 4. 15 ~ 4. 24 (10일간)
- ◎ 장 소 : 체네바시전시회의센타(Palexpo)
- ◎ 출품대상 :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 ◎ 출품방법 : 직접참가전시, 위탁출품전시
- ◎ 출품범위 : 발명(고안)·신기술로써 그 제품이나 사전, 도면

- ◎ 신청서 배포 및 접수
 - ▲ 배포 및 접수 : 1988. 2. 13까지
 - ▲ 신청장소 : — 135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전홍부
Tel : 557-1077~8, 568-8267
 - ▲ 신청방법 : 소정양식에 의거 직접 또는 우편신청(도착분에 한함)